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08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이성윤 · 이근태 · 박균택
전현희 · 장경태 · 김기표
김승원 · 김상욱 · 최혁진
박지원 · 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헌법과 현행 법률은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보호장치가 결과적으로 법관의 징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먼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됨. 성비위, 음주운전, 재판과 관련하여 법관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법관이 단기간의 정직과 감봉 수준의 징계만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일반 공무원이라면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법관은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운 책임만을 지는 결과가 발생함. 이는 법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음.

법관징계위원회의 폐쇄적인 구성 또한 징계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

기되는 원인임. 위원 다수를 법관으로 임명하다보니 징계절차가 객관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음.

징계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도 문제임. 현행법으로는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법관이 의원면직을 요청하면 퇴직할 수 있음. 징계 또는 탄핵 절차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를 무력화시킴. 게다가 법관이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징계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 재판을 계속 맡으면서 재판의 공정성 또한 훼손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법원 내부의 기강과 자정능력을 약화시키고 사법부 전체의 권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따라서 법관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여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직의 최대기간을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함(안 제3조제2항).

나.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관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법관 2명, 변호사, 공공기관 등에서 감찰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 4명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함(안 제5조).

다. 법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이나 예비위원이 될 수 없음(안 제5조제4항 신설).

라. 사법행정위원장과 감찰관이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1항제3호 신설 등).

마.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가 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감찰을 받고 있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바. 대법원장 및 각급 법원의 장은 감찰조사가 착수된 때부터 징계의결 때까지 당해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감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재판 이외의 다른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사. 탄핵소추가 있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 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탄핵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날 때까지 당해 법관의 임기가 계속 중인 것으로 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관”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3명”을 “2명”으로, “대법원장이 각각”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인사 또는 감찰사무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씩을 예비위원으로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법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나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을 “사법연수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법행정위원장

5. 감찰관

제7조의5, 제7조의6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그 비위사실이 재직 중의 행위로서 제3조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에 징계청구된 때
2.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3. 감찰관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제7조의6(징계결정전 조치) 대법원장 및 각급 법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관에게 재판 이외의 다른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감찰관이 비위조사에 착수한 때부터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대상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찰관으로부터 「법원조직법」 제81조의19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20조의2(탄핵 및 징계절차 중 법관의 임기) 탄핵의 소추가 있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제20조에 따라 징계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탄핵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나는 날까지 당해 법관의 임기가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생략)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u>1년</u>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u>2년</u>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생략)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u>3</u> 명을 둔다.	② ----- ----- <u>4</u> 명-----.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u>대법관</u>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u>3명</u> 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을 <u>대법원장이 각각</u>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 ① ----- ----- <u>사법행정위원회의</u> <u>심의 · 의결을 거쳐 대법관</u> --- --- <u>2명</u> ----- ----- <u>사법행정</u> <u>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u>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u>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 · 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u>

3. (생략) ② <u>예비위원은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u> ③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2. (생략) <u><신설></u>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u>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u>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u><신설></u>	<u>의 법인에서 인사 또는 검찰사무에 종사한 사람</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u>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씩을 예비위원으로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원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나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u>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법행정위원장</u> 4. ----- ----- ----- <u>사법연수원장</u>----- ----- 5. <u>감찰관</u>
---	---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5(의원면직의 제한) 의원
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그
비위사실이 재직 중의 행위로서
제3조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
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
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에 징계청구된 때
2.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3. 감찰관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제7조의6(징계결정전 조치) 대법
원장 및 각급 법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법관에게 재판 이외
의 다른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감찰관이 비위조사에 착수한
때부터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
할 때까지 대상 법관이 재판
을 담당하는 것이 현저히 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찰관으로부터 「법원조직
법」 제81조의19에 따른 요청

<u><신 설></u>	<u>이 있는 경우</u> <u>제20조의2(탄핵 및 징계절차 중</u> <u>법관의 임기) 탄핵의 소추가 있</u> <u>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중</u> <u>(제20조에 따라 징계절차가 정</u> <u>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법</u> <u>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u> <u>탄핵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징계</u> <u>처분의 집행이 끝나는 날까지</u> <u>당해 법관의 임기가 계속 중인</u> <u>것으로 본다.</u>
---------------------------	---